■ 병역법 시행규칙 [별지 제42호서식] <개정 2021. 10. 14.>

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3일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
	전화번호	
	주소	
	복무기관	복무분야
	소집일	소집해제예정일

복무중단 신청기간	20 . . ~ 20 . . ( )일간
신청사유 ※ 해당사유에 [√] 표시	[ ]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[ ] 본인 외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[ ]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·농경지가 유실되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[ ]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[ ] 그 밖의 사유

복무기관장 의견

「병역법 시행령」 제6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복무기관장 직인

○○지방병무청(병무지청)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1부(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2. 그 밖에 분할복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) 재난 등의 사실 확인서(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의 확인), 가족의 진단서, 가족의 사망확인서, 가족의 퇴직증명서 등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주민등록표 등본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사회복무요원 ①분할복무신청 → 복무기관장 ②분할복무의견송부 → 지방병무청장

④분할복무통지서 송부 ← 복무기관장 ③분할복무 여부 결정통보 ← 지방병무청장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